

##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1904 상품요약서

###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약의 보험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 해야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나이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3/5/10년	전기납	18세~70세	월납 연납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 상책임(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500m <sup>2</sup> 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화재상해추상장해					
중증화상및부식진단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깁스치료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 급형)(자가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 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자가용)					
특별약관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50%(연복리, 확정이율)
-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담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500m <sup>2</sup> 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화재상해추상장해, 중증화상및부식진단,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김스치료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3/5/10년	3/5/10년	월납 연납

- ③ 만기환급금
  - 2종: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0%
- ④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⑤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⑥ 보험목적외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⑦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특수건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⑨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⑩ 도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및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외 일반가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⑪ 안전한우리집 할인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건물) 내에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다.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을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1개 설치(배치)	2개 설치(배치)	3개 설치(배치)	4개이상 설치(배치)
안전한우리집 할인을	5%	7%	10%	12%

나.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

- 소화기
- 스프링클러
- 화재감지기
- 인덕션 또는 하이라이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가스누출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기

다. 안전한우리집할인을 적용대상 특별약관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

라. 세부사항

- 보험기간 내에 보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된 보험목적 내에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다.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율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준: 2종)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sup>주1)</sup>	지급금액
기본 계약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0%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선택 계약	화재손해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붕괴침강 및사태손해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도난손해 (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지진손해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화재 및 그 연소 피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문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보험가입금액 $\geq$ 보험가액의 80%	$(\text{손해액} - 100\text{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text{손해액} - 100\text{만원})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 80\%}$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전기손해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보험가입금액 $\geq$ 보험가액의 80%	$(\text{손해액} - 5\text{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text{손해액} - 5\text{만원})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 80\%}$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위험으로 인해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 인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를 한 경우 ※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연 100만 원한도 보상 ※ 6대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 중 최저금액 - 2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의 화재 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손해액 (단,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의 화재 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임차자 (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 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 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frac{\text{손해액} \times \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화재배상책임 (500m <sup>2</sup> 이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 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 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대인사고 사망	손해액 (단,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 내이며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대인사고 부상	손해액 (단, 피해자 1인당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대인사고 후유장해	손해액 (단, 「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상의

			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재산상의 손해	손해액 (단,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 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단지내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단지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단지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추락사고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10만원		
일반상해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20만원		
일반상해 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50만원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뇌,내장손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뇌, 내장 손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 뇌손상: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 정한 내장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 수술 또는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최초 1회한)	
일반상해 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20만원	
일반상해 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만원	
화재상해 추상장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재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외모(얼굴, 머리 및 목부분)	보험가입금액 x 2 x 후유장애지급률 <sup>주2)</sup>
		그 외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애지급률 <sup>주2)</sup>
		※ 단,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중증화상 및부식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00만원(최초 1회한)	
일상생활 강력범죄 발생 <sup>주3)</sup>	보험기간 내의 일상생활 중 아래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 사고부상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자가용)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연금 (체증형,월지급 형)(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운전중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연금 (체증형,월지급 형)(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자가용)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sup>주2)</sup>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일	1,000만원
			70일~139일	2,000만원
		140일 이상	3,000만원	
운전중사고 벌금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사고당 벌금액 (단, 2,000만원 한도)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가용)	보험기간 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1사고당 변호사선임비용 (단, 500만원 한도)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2)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은 3~100%임

주3) 강력범죄는 형법 제24, 25, 32, 38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를 말함

##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피보험자의 질병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④ 이 상품의 「화재손해(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도난손해(일반가재)」,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사고별금(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기준)

담 보 위 험		적용위험률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사망률	0.000006
	후유장해발생률 (3~100%)	0.0000042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척 I. 장기손해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5.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남자 40세 및 여자 40세, 10년만기, 10년납,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2종)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08.5	106.1

####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해지환급금

- 남자, 40세, 상해1급, 아파트, 건물급수1급, 특수건물, 자가, 거주, 지진등급 Zone1, 내진등급 없음, 주택면적 100m<sup>2</sup>,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월납, 2종
- 기본계약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 선택계약 : 화재손해(실손보상) 건물 1억원/가재 2,000만원,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건물 1억원/가재2,000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100만원,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300만원, 지진손해(비례보상) 건물 1억원/가재 2,000만원, 전기손해(비례보상) 100만원,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화재배상책임(500m<sup>2</sup>이하) 1억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발생(뇌,내장손상) 10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50만원, 화재상해추상장해 2,000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 1,00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1,200	-	0.0%
3년	273,600	-	0.0%
5년	456,000	-	0.0%
7년	638,400	720	0.1%
10년	912,000	-	0.0%

주)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1904의 안전한우리집 할인을 신청한 경우, 실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이 안전한우리집 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위의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